

—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—
—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3년 10월 20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3년 10월 21일

라. 상정일자 : 2003년 12월 23일

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3차 기획행정위원회
(2003. 10. 31)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6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 재 응

나. 제안이유

- 택지개발,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의 변화로 통리반 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의 과대·과소한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·폐합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함께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
- 또한, 통리반 증설에 따른 통리장 정수 조정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통리반 조정 : 22개통 145개 반 증설

- 통·리 : 538개 통리(통371, 리167) ⇒ 560개 통리(통371, 리167)
- 반 : 3,752개반 ⇒ 3,897개반
 - ※ 통 증설(22개통) : 송정(1), 도량(2), 형곡1(5), 사곡상모(3), 인동(11)

○ 통리장 정수 조정 : 22명 증가(통장)

- 통장 정수 : 현행 371명 ⇒ 393명(22명 증가)
- 리장 정수 : 현행 167명 ⇒ 167명(변동없음)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4조 6항및 동법시행령 44조
-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
-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춘 배

-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에 의거 행정동·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인 통리반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, 지역여건이 변화된 지역에 통리반을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함께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임.
- 택지개발 사업지구인 도량, 사곡·상모, 인동지구와 형곡, 송정지구의 아파트 신축 등으로 송정동 1개통, 도량동 2개통, 형곡1동 5개통, 사곡·상모 3개통, 인동동 11개통 등 총 22개통 증설과 함께 이와 관련된 145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임.
- 또한, 통 증설에 따른 통장 정수를 22명을 증원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의결